

취재보도 이론과 실제

제 1주 <언론의 이해>

배병화 광주대 신문방송학과 겸임교수

배병화

전남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광주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겸임)
광주지방법원 상근조정위원
민주통합당 전라남도당 상근 대변인

<신문사 경력>

- 무등일보 기자 (1988.6 ~ 1991 .3)
- 광주매일 기자/데스크 (1991.4 ~ 2001.10)
(정치, 경제, 사회, 문화체육부장)
- 전남매일 편집국장 · 논설주간 · 상무이사(2002.10 ~ 2010.9)

<저서>

- 지역신문과 로컬리즘: 이론과 실제(2009)
- 지방신문해법 개혁이냐 지원이냐(2003)
- 인터넷 이용자의 법적 보호(공저 2002)
- 전자상거래와 법률문제(공저 2001)

1. 뉴스(news), 기사(news story)

➔ 뉴스

- [국어사전] ① 새로운 소식을 전하여 주는 방송의 프로그램.
② 일반에게 잘 알려지지 아니한 새로운 소식. '새 소식'으로 순화.

[위키백과] 뉴스(news)는 뉴스 가치(news values)에 의해 선택된 사실.
즉,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실이나 사건을 보도의 틀에 맞도록
재구성한 이야기

영어로는 저널리즘(journalism)

- 인쇄저널리즘(printed journalism)
신문언론(newspaper journalism): 신문이라는 대중매체를 통해 위와 같은 활동을 수행하는 것
잡지언론(magazine journalism): 시사주간지 등을 통한 것
- 방송저널리즘(broadcasting journalism)
방송언론: 라디오나 텔레비전, 케이블, 위성이라는 대중매체를 통해 수행하는 것

<TIP 1> 여론과 언론

여론 : 사회적인 쟁점이나 문제에 대한 대다수의 의견.

언론 : 신문 잡지나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등을 통하여 어떤 사실을 밝혀 알리거나 어떤 문제에 대하여 여론을 만들어 나가는 활동.

2. 언론·출판의 자유, 자유롭고 책임있는 언론

우리 헌법 제21조: 언론·출판의 자유(표현의 자유)

미국 수정헌법 제1조: 신앙의 자유, 언론이나 출판의 자유, 집회 권리, 청원 권리

국민의 언론과 출판을 국가로부터 제한 받지 아니하는 자유.

넓은 뜻으로는 표현의 자유의 별칭, 좁은 뜻으로는 표현의 자유 중 언어와 인쇄를 매체로 하는 것을 가리킨다. 우리 헌법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 (21조). 언론·출판의 자유는 민주정치의 필수적인 사상표현의 자유이며, 소극적인 자유이기보다 적극적인 민주정치의 구성원리로서의 의미.

【연혁】언론의 자유

1647년 및 1649년 ➤ 영국 국민협정(Agreement of the People): 헌법적으로 보장하려고 한 최초.

1689년 ➤ 권리장전(Bill of Rights): 의회에서의 언론 자유 보장

1695년 ➤ 검열법(The Licensing Act) 폐지-비로소 출판의 자유 확립

1776년 ➤ 미국의 버지니아 헌법, 1789년 미국 헌법에서는 법률로서도 제한 할 수 없는 절대적 자유로 보장

1789년 ➤ 프랑스 인권선언(11조): '사상 및 의견의 자유로운 교환은 인간의 가장 귀중한 권리의 하나이다'라고 선언한 이래, 모든 입헌국가가 헌법적으로 보장.

【내용】언론 · 출판의 자유

개인의 의견이나 사상을 외부에 발표하는 자유이며, 양자는 그 표현하는 수단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역사적으로 처음에는 언론이 중요한 수단이었으나, 인쇄술의 발달에 의하여 출판이 사상표현의 중요한 방법이 되었다.

언론이란 담화·토론·연설·연극·방송·음악·영화 등 구두(口頭)를 통한 사상발표를 말하고, 출판이란 문서와 서적·도화·사진·신문·잡지·조각 등 문자 및 상형(象形)에 의한 사상발표를 말한다. 그러나 학문적·예술적인 것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22조)로서 별도로 보장된다.

현대에는 특히 신문·잡지·라디오·TV 등 매스컴이 중요한 수단이 되었으며, 따라서 언론·출판의 자유에는 보도(報道)의 자유가 포함된다. 그 중에서도 신문의 자유가 대표적인 것이므로, 국민의 '알 권리'와 매스컴의 '알릴 권리'로서 보장한다.

언론·출판의 자유는 사전 검열제도(事前檢閱制度)나 허가제도가 없어야 보장한다. 일찍이 W. 블랙스톤이 '출판의 자유는 발표 전에 사전제한을 하지 않는 데 있다'고 한 것은 이를 잘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 '언론기본법'도 이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21조).

【한계】

언론·출판의 자유는 민주정치에서 필수 불가결한 것이지만, 무제한으로 방임될 수는 없다. 우리 헌법은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21조 4항),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게 하였다(37조 2항). 또, 언론기본법에서도 언론의 공적책임(公的責任)을 밝혔다(3조).

3. 언론의 기능과 역할

<기능> 보도와 논평, 정보와 의견



역할

두 개의 얼굴을 가진 감시견
얼굴 하나는 부단히 사회를 감시하며 짚어야 하고,
또 하나의 얼굴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감시해야 한다.
언론은 밖으로 사회를 비추고 안으로 자신을 반성할 때라야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다.

논란

언론권력화 vs. 대항기관

프랑스 르몽드

기존 언론과 다른 대안언론의 모습

국내 3대 일간지

자기반성 없는 거대언론

국내 방송

국가권력에 휘둘리는 상업방송

4. 언론의 종류

방송사

신문사(잡지사 포함)

통신사

종합편성채널

→ 텔레비전방송사

*공중파방송사

방송3사인 한국방송, 문화방송, SBS

*민영방송사

부산방송, 대구방송, 광주방송, 대전방송, 울산방송,
강원민방, 청주방송, 전주방송, 제주방송

→ 케이블 · 위성방송사

→ 라디오방송사

방송사

신문사(잡지사 포함)

통신사

종합편성채널

→ **종합신문사** → **지역신문사** → **전문신문사** → **기관지**

• 지역신문사

우리나라에서 서울에 본사를 두지 않고 각 지역(광역시나 도청소재도시) 마다 본사를 두는 신문사.

특정 구시군의 소식만 발행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신문이 지역신문.

• 전문신문사

전자나 철도, 도로, 교통, 농업, 의약같은 분야의 소식이나 관련회사의 광고만을 싣는 신문.

<TIP 2>

발행 간격에 따라 일간신문, 주간신문, 월간신문, 계간신문, 연간신문

방송사

신문사(잡지사 포함)

통신사

종합편성채널

→ 통신사

독자적인 뉴스취재만을 전문으로 하는 언론.
신문사와 방송국에 통신사가 뉴스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시장적인 면으로 보면 뉴스의 도매상의 역할



방송사

신문사(잡지사 포함)

통신사

종합편성채널

→ 종합편성채널

종합편성채널(綜合編成)이란 대한민국에서 지상파 방송처럼 보도와 오락·교양 등 모든 분야 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있는 채널. 줄여서 종편(綜編)이라고도 한다.



<TIP 3>

인터넷 언론

발행자(publisher):언론사

출판사 출판업자 발행인
(신문)경영자

VS

인터넷 포털 뉴스서비스

배포자(distributor):
이른바 인터넷 포털 뉴스
서비스업체

배급업자 유통업자 판매자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부가통신서비스로서의 인터넷 포털

*현행법상 언론으로서의 인터넷 포털뉴스서비스의 법적 지위 부여의 가능성

「방송법」상 '방송사업자'인지 여부

「신문법」상 '인터넷신문사업자'인지 여부

「언론중재법」상 '언론'인지 여부

「공직선거법」상의 규제대상 포함여부

<TIP 4>

미디어법제 개정(2009년)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사회적 책임 제고를 위한 방편으로 2009년 언론 중재법을 중심으로 관련 미디어 법제의 개정.

개정된 언론중재법에 따르면 인터넷뉴스서비스가 되기 위해서는 언론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이어야 하며, 이러한 전자간행물이 인터넷 신문이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에 해당될 경우나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가 제공한 것이 아닐 경우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에서 제외.

인터넷뉴스서비스로 인한 피해자 구제방안을 강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하여금 독자적인 정정보도청구 등의 상대방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기사제공언론사의 동의 없이도 정정의무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한 만큼 문제의 소지.

또한 고의·과실뿐만 아니라 위법성을 요하지 않고 있는 정정보도청구 등 반론권 규정 자체에 대해서도 편집권 침해와 관련된 논란의 여지.

언론·출판의 자유의 한계를 선언하고 있는 헌법 제21조 제4항의 내용을 보다 상세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인터넷뉴스서비스로 인한 피해구제에 있어서는 인터넷 공간의 특수성을 고려한 반론권을 중심으로 새로운 기준설정이 필요. 오프라인과 동일한 방식을 취할 경우 효과적인 측면에서 미지수.

외국의 경우에도 인터넷상의 독자적인 반론권이 최근에서야 도입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 보다 많은 논의가 필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법적 책임과 관련하여 기술의 발전에 따른 편집방식 변화에 대해서도 주목해 볼 필요.

기사에 대한 관리나 통제권한이 없는 자동화된 편집방식임을 이유로 구글 뉴스의 언론성을 부정 한 벨기에 법원의 판결은 우리에게 충분한 시사점.